

뉴스타파가 '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'가 아니라는 KBS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보도내용

- KBS는 11월 3일 「[가짜뉴스]② 비영리 민간단체 '뉴스타파'는 방심위 심의대상일까?」 제하의 기사를 통해
 - 인터넷신문도 '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'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 의견인데
 -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'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'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①전기통신사업자와 ②영리를 목적으로, 유·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컴퓨터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
 - “‘비영리 민간단체’인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”는 내용을 보도

□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4호에 근거하여 “전기통신회선(정보통신망)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”를 심의할 수 있음
 - ‘인터넷신문 등’의 기사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방심위의 통신 심의 대상임

- 또한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제3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‘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’로 정의하고 있어, 전기통신사업자인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’에 해당됨
 -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(뉴스타파)가 비영리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'14.12.11일 최초 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(부가통신사업자)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’에 해당함

< 관련 법령 >

방통위법 제21조(심의위원회의 직무)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4. **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**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

정보통신망법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**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**”란 「**전기통신사업법**」 제2조제8호*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.

* **전기통신사업법 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“전기통신사업자”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(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)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
제22조(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)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(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담당 부서	이용자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천지현 (02-2110-1510)
	가짜뉴스정책대응팀	담당자	팀 장	이기훈 (02-2110-1640)